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 번째 소위...'경영자 의무범위' 쟁점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2.30 13:08

여야, 연일 소위 진행...논의 진전 보일까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의무서 빼

여당 내부서도 정부안 비판 목소리



정치하는 엄마들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이 내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 김한주 기자

30일 오후 2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에서 다시 열린다. 지난 29일 소위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지난한 토론만 이어졌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구분 정도였다. 법안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 대한 토론을 거친 만큼 향후 소위 논의가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오늘 소위는 경영책임자, 법인의 안전 관리 의무를 핵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안에선 대상자인 '이사'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축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 조항에서는 정치권과 운동본부의 간극이 크다. 정부가 제시한 의무 범위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의한 위험 △추락·붕괴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에 따른 위험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구체적인 의무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남겼는데 이 또한 빈약하게 규정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운동본부는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면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 공기 단축 금지, 급박한 위험의 작업 중지 등이 모두 누락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것인지도 여야에 남은 숙제다. 원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선 정부안에 따라 '동일한 원인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다. 정부안에 힘이 실리면 구의역 김군도, 고 김용균 노동자도 중대재해가 아니게 된다.

운동본부는 정부안 중 사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정부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2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4년 유예안을 내놨다. 운동본부는 "50인 미만 적용 유예도 문제인데 100인 미만 유예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개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법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예방 조치를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을 인정해도 (정부안이) 과도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8명 사망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시공사 직원 수도 62명이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구의역 김군을 포함한 수많은 중대재해 희생자와 앞으로도 계속될 희생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 훼손을 막기 위해 30일 1만인 동조단식에 나섰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당선인은 지난 29일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인근에서 분산 촛불 시위를 열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한 지 20일 차,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한 지 24일 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재순 아버지 김선양 씨,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진숙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단식한 지 3일 차다.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